

남북중재규정에 따른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소고

박 종 삼 *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중재규정의 기본원칙
- III. 남북중재규정의 주요 쟁점 검토
- IV. 결 론

*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조교수

I. 서론

지난 시기 우리기업은 대북경협과정에서 계약관계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경제외적인 문제로 인한 손실,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손실 등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분쟁해결제도의 미비성, 북한의 분쟁조정 당국과의 접촉의 어려움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넘어왔다. 그러므로 남북간에 상사분쟁 해결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경협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적절한 손실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것이 안정된 남북경협을¹⁾ 가능하는 주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기업들에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동년 12월 16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상사분쟁해결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사분쟁을 합리적 제도와 기구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을 남북경협에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경협에 적용할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최근까지 4개 합의서 발효통지문을 서로교환²⁾하

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중삼,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상공회의소 연구총서, 2001.3 참조.

였고, 2002년 10월 12일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중재위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³⁾

따라서 합의서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남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구성이 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쌍방의 중재규정초안을 기초로 합의되고 통일화된 중재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상사중재절차와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신설하는 기초가 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남북 당국간에 제도적 중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탄생으로 향후 남북간에 발생하는 교역 및 투자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중재규정은 이러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북간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중재규정은 ‘남북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범주를 그 한계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 합의서들의 내용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경협에서 발생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기구 및 관행들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남북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경협의 질적 성장과 양적성장 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당국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시킨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합

2) 2003. 8. 20.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에 관한 통일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참조.

3) 전문 및 14조로 구성된 이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이며 북측 서명자는 건설전제공업성 부상 최영건(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이다.

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먼저, 남북중재규정의 일반적인 원칙 등을 살펴보고, 이어, 남북중재규정의 내용들에 대한 법리적·실무적 쟁점들을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요약함과 아울러 향후 남북중재규정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중재규정의 기본원칙

1. 독자성의 원칙

남북은 각자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⁴⁾ 대체적으로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남측은 대한상사중재원, 북측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의 중재사무처리기관간 상호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각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업무처리의 구조적 특성이 중재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⁵⁾ 남북간 중재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남북중재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국제성의 원칙

남북중재규정은 한민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4)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5) 김연호,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4.9, p.8.

중재규정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 상호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국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또는 UNCITRAL 모델법등과 비교할 때에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남북중재규정은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정이거나 국내상거래기업과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과 국제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중재제도는 대체로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나 국제상사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을 수용하는 추세와 각국의 중재법제는 대체로 통일화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⁶⁾ 즉 외국의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재이용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중재제도의 보편성 및 국제성을 견지하여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하에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중재규정의 국제화는 상사중재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동질적인 인식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

3. 신속성의 원칙

중재에 있어 신속절차(신속중재절차)란 상사분쟁을 중재절차상 일반 중재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6) 우리나라의 중재법도 1966년 3월16일 제정 공포된 이후 1999년 12월 31일, 1985년에 제정된 유엔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 대폭 수용 되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거의 상사중재규칙)도 1989년, 1993년, 1996년 개정시에 유엔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수용한 바 있다.

7)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정에 관한 소고”, 남북상사중재 정책 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4.9, p.107.

편익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중재절차라고 할 수 있다.⁸⁾ 그러므로 남북 중재규정은 남북간 상품거래에 기인된 분쟁 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상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무엇보다 신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남북중재제도는 남북간의 경협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개선 내지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중재제도는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을 장점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⁹⁾

4. 명료성의 원칙

남북중재규정은 남북간 체제차이에서 오는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
- 8) 미국중재협회는 이미 1971년 이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스톡홀름상업회의소중재협회는 중재규칙과는 별도로 신속중재규칙을 제정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도 신속중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에서 신속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두남, 2003, p.402).
- 9) 오늘날 상사중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와 신속절차제도(Expedited Procedures)가 개발되어 있다. 온라인분쟁해결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ADR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과 정보기술의 결합은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탄생시켰으며 그것은 돈과 시간을 구제하는 인터넷의 힘으로 ADR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남북상사중재는 원격지간 당사자사이의 중재라고 할 수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ODR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제도에서 ODR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는 오프라인 ADR제도에서 발전된 것¹⁾이며 상황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 초안에 규정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cyber) 알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이버 조정제도가 있다(최장호, 앞의 논문 참조, 상세한 내용은 박종삼, “온라인 ADR에 관한 소고”,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4.4참조).

해석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중재규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중재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남북양측간의 또 다른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중재규정은 어떤 규정보다도 명료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즉 중재규정의 명료성은 우리 측 중재규정초안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남북중재규정의 주요 쟁점 검토

1. 중재합의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없어도 중재가 가능한 분야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1항에 따라 남북투자분쟁의 해결인데 이에 따르면 협의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의 대상은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관한 분쟁”으로 적시하고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산의 보장이 침해되었을 경우 즉 “남과 북의 투자가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해결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침해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아도 중재의 관할이 발생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한편,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이 경우 중재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상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서면성의 확대조치방안의 하나로

서 팩스, 편지, 전신, 전보의 방법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중재합의 즉 이메일의 내용을 통하여 중재합의가 확인될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재합의는 기본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만 기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중재합의는 기본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⁰⁾ 다만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는 중재이전 단계로서의 알선이나 조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단지 동 합의서 제17조에서는 중재신청 후 조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중재이전에 남북중재규정에 알선이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중재규정에도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¹¹⁾

2. 중재의 개시

가. 중재신청의 대상기관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물리적 장소는 남북의 각 중재사무처리기관이 되나, 중재신청의 대상기관이 중재위원장(또는 중재위원회) 또는 각 중재사무처리기관(남:대한상사중재원, 북: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 어느 쪽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는 중재 접수대상기관이 중재사무처리기관이라고 함이 현실에 맞고 행정상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중재신청의 대상기관은 후자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동기관에서 중재신청의 접수뿐 아니라 답변서, 반대신청의 접수기관도 동일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본다.

10) 김연호, 앞의 논문, pp.10-11.

11) 백운재,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 한중중재학회, 2004.9, p.29.

나.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답변서, 반대신청

중재신청이 접수 되었을 경우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상대방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동일 지역에 속하는 당사자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이다. 동일 지역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접수한 중재사무처리기관이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 접수통지를 직접 하고 상대방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는 접수통지만 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경제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재신청 접수통지를 할 때에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인명부도 같이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중재인선정기한을 중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²⁾

중재신청 접수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단지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신청접수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너무 짧으므로 연장하는 것이 옳고(중국 중재규칙은 45일)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기한을 확정하여 중재접수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화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중국 중재규칙은 60일 이내로 정함).¹³⁾ 또한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중재인 명부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12)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접수통지와 함께 중재인 명부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며 당사자들은 중재접수통지일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중재인선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3) 김연호, 앞의 논문, p.12.

다. 중재신청의 철회

당사자는 중재신청을 한 후에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을 하였거나 심리절차에서 진술한 이후에는 응소의 이익, 절차권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신청을 할 것을 인지하고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절차가 반복될 우려도 있다.¹⁴⁾ 다만, 이 경우에도 중재비용의 예납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중재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¹⁵⁾

라. 중재지

중재지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중재장소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재지에 관한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수도(서울 또는 평양)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중재장소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치면 절차지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사무소로 확정함이 현실성과 신속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중재관련 규정에서는 중재지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조정절차의 도입

남북상사중재에 조정절차를 도입하였으나, 분쟁해결합의서 제17조 1항에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절차 안에서만 조정제도만 도입되었고 독자적인 조정절차는 아직 남북당국이

14) 장승화, 앞의 논문, p.40.

15) 장승화,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론편자료,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 p.41.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정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정인 1인 또는 3인이 조정을 하며, 조정인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절차가 재개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재인도 조정인이 될 수 있고 중국 중재규칙처럼 조정이 실패한 경우 조정절차 내에서의 주장, 의견, 제안사항이 중재절차에서 주장, 항변, 반대신청의 자료로 이용될 수 없다 라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⁶⁾

3. 중재판정부

가.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 구성은 당사자합의로 3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인명부에서 각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당사자선정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신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방당사자는 자신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협의에 의하더라도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¹⁷⁾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¹⁸⁾

여기에서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인

16) 김연호, 앞의 논문, p.13.

17) ICSID의 설립동기는 와싱턴협약(1965.3.18작성 1966.10.14발효)에 근거하여 계약국과 다른 계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두남, 2003, p.244).

18)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 1항.

명부가 활용되고 중재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만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의장중재인 선정을 위한 ICSID의 개입 이전까지는 중재인명부상에 오른 자만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데에 특징이 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선정된 중재인에게 선정통지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신속한 중재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¹⁹⁾

나. 중재인의 부적격사유 고지

중재인의 부적격사유 고지에 관하여 중재인이 중재인선정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중재인은 당해 사건의 중재인으로 활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재인 수락절차가 있으므로 중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락거절을 하면 되고, 굳이 부적격사유를 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중재인의 부적격사유 고지제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중재인 부적격사유 고지 규정은 통상적으로 중재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당사자에게 중재인에 대한 신뢰를 더욱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중재인의 자격 관련 고지시점과 관련하여 취임수락 요청서와 부적격사유 확인 및 고지서류를 함께 송부하여 중재인이 취임수락 요청을 받았을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재절차의 신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²⁰⁾

다.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기피 신청은 남북 쌍방 중재위원회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중재위원회 합의서 제5조 6항)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여기에서 합의

19) 김연호, 앞의 논문, p.14.

20) 김경원,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 p.25.

의 정의가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를 의미하는지 다수결을 의미하는지 합의서 제5조 9항에 의거하여 중재위원회 운영규정이 추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중재인의 보궐

중재인이 사임, 사망, 기피신청수용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중재인 선정의 예에 따라 선정하면 된다. 보궐중재인의 참여로 진행될 중재절차는 종전의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속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간 전부 또는 일부 심리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신 중재인에게 종전의 심리결과를 진술하여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와 신 중재인의 이의제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²¹⁾

4. 중재심리절차

가. 중재의 대리

중재의 대리는 사적자치의 중재제도 본질과 북한사회의 특수성(변호사 자격 존재에 대한 의문)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정에 비추어 남북상사중재에 대해 특별히 자격을 강화(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봄으로 “변호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²²⁾

나. 심리의 방식-서면심리의 인정

21) 장승화, 앞의 자료, p.42.

22) 김정원, 앞의 자료. p.26.

남북중재 여건상 자주 구두심리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지만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간에 서면심리에 관한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함이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준비서면과 서증 입증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심리기일 이전 사전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요약준비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약준비서면제도는 중재판정부가 쟁점정리를 목적으로 한 편의상 조치에 불과하고 여타 기관중재사례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당사자의 해태, 불출석, 심리의 연기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불특정하거나 신청이유 및 입증방법을 불명시하는 등 해태를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 종결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 당사자의 심리기일 불출석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기재출된 증거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판정할 수 있되, 양 당사자가 2회 이상 연속불출석한 경우에는 중재절차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당사자는 중재심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의 제한, 횟수제한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중재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개별사건마다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라. 증거조사

먼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증거신청권을 부여하되 중재판정부가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증거조사도 가능하고 또한 당사자에게 특정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부는 검증이 필요하면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의 경우에도 당사자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검증 감정에 따른 비용의 예납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²³⁾ 증거조사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의 자유심증의 원칙을 선언하고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출석권, 반대신문권 보장규정이 명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마. 심리의 종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다 행해졌다고 판단하면 심리종결을 선언한다. 여기에서 심리종결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당사자에게 제출권마저 배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중재판정부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리재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한 다음 각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판정문의 제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판정의 기한이 규정된 이상 중재판정부에 형식적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였다고 판단된다.

5. 중재판정

가. 중재판정의 시한

중재판정의 시한에 관하여 남북 분쟁해결합의서 제14조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정시한인 6개월은 대체적으로 짧고 기한에 쫓길

23) 김연호, 앞의 논문, p.17.

경우 졸속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분쟁 해결합의서 제14조의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3개월 연장”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 중재판정의 범위

남북간 상사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는 선택적 분쟁해결수단이 아니고 전속적 해결수단이므로 가급적 모든 해결방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계약의 이행뿐 아니라 중재합의의 범위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한 정당한 손해배상, 기타 당사자구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따라서 일반 중재판정처럼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절차의 예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케 하도록 함에 특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은 남북중재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고 중재위원회 운영합의서 제4조(위원회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남북의 재판기관은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할지역 재판기관은 판결문과 같이 중재판정문 인증등본, 중재합의 인증등본만 제출되면 바로 집행문을 부여하고 집달관선임 등의 구체적 집행절차가 가능하

24)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제3항, 중재위합의서 제3조제4항.

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남북간의 중재에 따른 중재판정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서 말하는 외국의 중재판정에 해당되어 남북이 아닌 제3국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점은 과거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진 몇 건의 임시적(ad hoc) 중재건을 대상으로 삼아 추후 연구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²⁵⁾

7.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의 취소방식으로 행해짐이 일반적이는데 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제18조는 이것을 인정하되 재판기관이 아닌 중재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므로 중재규정에서 취소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²⁶⁾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공질서(public policy)인데 중재제도라 하더라도 자국의 법체계 범위 안에서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질서 위배를 중재판정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일리 있는 태도 있으나 그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한데다가 그 남용 위험성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남북법체계의 이질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단 공공질서 위배는 중재판정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중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남북간 이해가 충분히 확보되고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5) 백운재,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정책세미나, 2004.9. p.30.

26) 판정취소사유에 관하여 북한이 비록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협약(뉴욕협약)의 가입당사자는 아니지만 각국 입법례에 따라 협약의 취소사유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중재비용

남북상사중재는 국제중재와 유사하고 국내중재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행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수당, 요금체계로는 고품질의 중재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인수당, 요금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의 보수 및 비용의 산정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소요액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IV. 결 론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가 투명하고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지만 많은 당사자들이 중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남북한 3대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적대감 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현안문제가 되었던 상사분쟁해결합의서를 포함하여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 중에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남북중재규정이 남북 교역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중재규정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상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 중재판정부구성시의 국제중재기구개입: 남북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 구성에 국제중재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중재기관의 중재절차, 특히 중재판정부 구성이 제3자인 외부의 국제중재기구와 연계된 경우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제10조 제4항)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중재규정초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분쟁해결의 공정성 문제: 남북한 상사분쟁에서 중재를 이용하지 않고 북한이나 남한의 법원에 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추구한다면, 분쟁해결의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법체제에서와는 다른 의외의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²⁷⁾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은 합작법과 마찬가지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한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남북한간에 협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도록

27) 더욱이 가장 최근에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에서도 협의의 불성립시 남북한간에 협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거나 중재, 재판절차에 의해 해결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중재와 재판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 없이 응한 경우에만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최근 우리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318판결)에 따른다면 개성공업지구법의 중재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남북한이 미리 합의를 한다면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역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에서 우리 기업이 북한측 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북한기업 대 남한기업이라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대 남한기업이라는 국가 대 개인의 관계가 된다. 더군다나 사회주의국가에서 민사소송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에 그 목적이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를 담당하는 주체사이의 분쟁해결에 그 중심이 놓여있으므로²⁸⁾ 북한과의 상사분쟁해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신뢰구축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중재에서는 절차, 적용법규 등 모든 부분에서 어느 한나라의 규정에 따르기 보다는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결과에 따라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²⁹⁾

셋째, 중재규정의 국제화 추진: 중재규정의 국제화는³⁰⁾ 상사중재의

28) 안춘수, 거래안정성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외거래관련법, 통일연구, 1997, 119면.

29) 에컨대, 독일의 경우, 통일 후에도 동독지역에서는 일부 동독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76년의 국제경제계약법이었다. 이 법은 원래 대외관계를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나 원칙이 기존의 다른 동독법과는 달리 국제수준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 후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서독의 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정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구체적인 절차내용을 결정한다면, 통일 후에도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북한의 법적 체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정선주, “동서독 상사분쟁 해결방안이 남북한 분쟁해결에 주는 시사점”,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pp.149-154).

30) 오늘날 각국의 중재제도는 대체로 유엔 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나 국제상사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을 수용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중재법제는 대체로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도 1966년 3월16일 제정 공포된 이후 1999년 12월 31일, 1985년에 제정된 유엔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 대폭 수용 되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거의 상사중재규칙)도 1989년, 1993년, 1996년 개정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동질적인 인식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1973년 5월 9일 42번째로 뉴욕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상사분쟁해결방안으로서 중재가 선택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중재제도 자체가 자칫 비효율적이 될 위험이 존재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이 성공하고 서방 국가의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뉴욕협약과 “국가와 타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의 가입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남북한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여 자국의 중재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재판정사례의 공개: 일반적으로 중재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 드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중재판정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기업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어 상사분쟁에서 기업들이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재제도의 장점은 일반중재에서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남북한 중재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 중재에서는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을 법원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남북한 상사분쟁의 중재판정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판례처럼 열람이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관련기업들이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시에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도 있다. 나아가 중재판정사례의 공개는 중재판정부의 일관성 있는 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재판정부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한 사이의 중재규정은 원만한 상사분쟁제도를 수립하고 남북경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 분쟁문제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자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책임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남북경협을 특정의 환경과 정치논리에서 탈피시키고 철저한 경제원리와 원칙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속·발전시키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렵게 합의를 본 중재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합의서상의 규정을 남북당국이 철저히 준수·이행하고자하는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남북한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폭되면 될수록 분쟁적 요소는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와 기구 및 관행 등의 안전장치를 제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제정하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의 확대는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4.
- 강이수, 『국제통상론』, 삼영사, 2003.
- 김경원,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
- 김광수, “남북상사중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중재』 제312호, 2004.
- 김명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해설” 『중재』, 제311호, 2004.
- 김연호,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4.9.
- 권재열,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법제에 관한 연구(I)”, 『법학연구』, 제6권, 1996.
- 박종삼, 『최신무역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4.
- _____, “온라인 ADR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7집 제2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4.9.
- _____,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상공회의소 연구총서, 2001.3.
- 백운재,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
- 안춘수, “거래안정성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외거래관련법”, 통일연구, 1997.
- 이장희, “동서독 내부거래의 법적 토대가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에 주는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제38권 제2호, 1993.

- 장승화,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론자료”,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2004.9.
-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두남, 2003.
- _____,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정에 관한 소고”,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한국중재학회, 2004.9.
- 한찬식, 이원희, 유영준, 『한일투자협정해설』, 2003.
- KOTRA, “북측의 대외경제중재법 해설”, 『북측뉴스레터』 1999년 8월호.
- Baker, S.A. and Davies, M.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Practice - The Experience of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1992.
- Bernini, G and van den Berg, A.,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States: The Problem of Immunity from Execution,” in *Contemporary Problem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ew, J. ed.) 1987.
- Brower, C. and Brueschke, J.,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1998.
- Hamilton, P., Requena, H.C., van Scheltinga, L., Shifman, B.,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1999.
- Khalil, M.I.,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Bilateral Treaties,” 7 *ICSID Review-FILJ* 339, 1992.
- Legum, B., “Trends and Challenge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9, No.2, 2003.
- Parra, A.R.,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4 *ICSID Review-FILJ* 299, 1999.
- Redfern, A. and Hunter, M.,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99.

Sands, P. and Klein, P., *Bowett's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2001.

Shreuer, C.H.,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2001.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2000.

* 그 외 제반 관련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참조.

ABSTRACT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outh-North Korea Arbitration Rules

Jong-Sam Park

To realize the spirit of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ached agreements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s well as to set up a South-North arbitration rule which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d and review carefully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so

The South-North Korea Commercial Rule is an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orm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situation,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manage and control the Arbitration Rule for prompt and effective resolution of South-North Korea of commercial disputes

It is probable that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South Korea should be written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n arbitral body after thes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appointed.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the South-North Korea write the only

one South Korean draft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tion institution of South Korea because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institution in South Korea, statutorily empowered to settle any kind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Arbitration Rul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
KCAB